

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4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5. 9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5. 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5. 22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조석래)

가. 개정이유

- 신규도서관 개관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상위 법령에 규정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제명 변경

- 현행: 「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
→ 개정: 「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

2) 신규도서관 추가(안 제1조, 제2조)

- “고성동부도서관” → “책둑병도서관” 및 “고성동부도서관”

3) 시행규칙명 삭제(안 제5조)

4) 상위법령에 있는 불필요한 항목 삭제(안 제8조)

- 자료의 폐기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도서관법」 제5조, 제29조, 제4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- 2)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기 확보
- 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검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12561(2025. 03. 31.)]

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659호
· 예고기간: 2025. 03. 28 ~ 04. 17.(20일간)
·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하반기 개관예정인 책둠병도서관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제명 변경
 - 「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 → 「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
 - 목적 및 위치(안 제1조~제2조)
 - 책둠병도서관과 고성동부도서관을 고성군 공공도서관으로 규정하여 위치를 명시하였음.
 - 자료의 폐기(안 제8조)
 - 도서관 자료의 폐기와 관련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음.
- 책둠병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5. 22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